

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6. 12.

제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. 6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2009. 6. 19.(제160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최남용)

가. 제안이유

- 새마을운동 조직은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와 「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
 -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과 방법,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에 혁신 봉사 할 수 있게 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새마을 운동 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 - 제천시 새마을회, 새마을 지도자 제천시협의회, 제천시 새마을 부녀회, 직·공장 새마을 운동 제천시 협의회, 새마을문고제천시 지부, 새마을 교통봉사대 제천지대
 -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)
 -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표창
 -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
 -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

- 보조지원 범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(안 제4조)
 -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, 새마을사업 추진,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등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소요 경비 지원.
- 보험가입 규정을 마련함 (안 제5조)
 -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완식)

-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

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꾀 하므로서 새마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·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제 3 조에 근거하고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이견은 없음
- 조례안 제5조와 관련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와 보험보장 내용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유사 단체에서 조례제정이나 지원요구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(답변자 : 사회복지과장 최남용)

- 타 봉사단체와 형평성문제 어떻게 해결할것인지?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?(성명중 의원)

: 안제5조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이통장협의회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.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6. 반대토론효지

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지원근거는 법적이견은 없으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타 단체에서 조례 제정 요구시 대책이 미흡하므로 반대의견을 제안함.

7. 심사내용

- 성명중 의원 제천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반대안 발의
- 반대안 표결결과
 -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
(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)

8. 심사결과

「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」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1부. 끝.